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2. . . (제 회)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의 정보화계획 반영(안 제13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반영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2)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화계획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정

보시스템을 연계이용하거나 공동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 제도 도입 등
(안 제30조,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인증의 표시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
(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012. 5. 29. ~ 6. 12
- 3) 규제심사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의 정보화계획 반영(안 제13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반영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2)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화계획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연계이용하거나 공동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 제도 도입 등(안 제30조,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인증의 표시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3)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체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9의3.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7.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정보통신 윤리”를 “정보통신윤리”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제1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12조제2항제5호 중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로, “최대한 반영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정책의 개발,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시책의 지원

제14조제3항제9호 중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각각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제4장제1절의 제목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을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수립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그린인터넷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에 그

린인터넷인증 마크(이하 “그린인터넷인증마크”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
3.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1항 중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36조제2항 중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정보통신 윤리”를 “정보통신윤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보통신 윤리”를 “정보통신윤리”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4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권한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 12. (생략)
 ④·⑤ (생략)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⑤ (생략)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9.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6. (현행과 같음)
 7. ----- 정보통신윤리 -----

 8. ~ 1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4. (생략)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생략)

③·④ (생략)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

----- 반영하여야 ----.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략)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

-----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
----- 정책의 개발,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p>1. ~ 6. (생략)</p> <p>7. 정보문화의 창달과 <u>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u></p> <p>8. <u>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u></p> <p>9. 건강한 정보문화의 <u>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u></p> <p>10. 국가정보화, <u>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u></p> <p>11. 국가정보화, <u>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 협력 및 홍보</u></p> <p>12. · 13. (생략)</p> <p>④ ~ ⑧ (생략)</p> <p>제24조(국제협력) ①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인터넷중독</u>-----</p> <p>8. <u>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시책의 지원</u></p> <p>9. ----- <u>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u>-----</p> <p>10. ----- <u>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u>-----</p> <p>11. ----- <u>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u>-----</p> <p>12. · 13.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24조(국제협력) ① (현행과 같음)</p>
--	---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생략)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현행과 같음)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

<신 설>

<신 설>

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
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
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그린인터넷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

<신 설>

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에 그린인터넷인증 마크(이하 “그린인터넷인증마크”

<신 설>

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
3.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및 그 밖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신 설>

제32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
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에 웹접근성 품
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웹접
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
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
시를 하거나 웹접근성 품질인증
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
-----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
기 -----
-----.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
책을 시행하기 -----

-----.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권한
-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